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제정 2003. 1. 28
	1차개정 2006. 2. 21
	2차개정 2006. 3. 21
	3차개정 2006. 7. 25
	4차개정 2007. 1. 30
	5차개정 2007. 5. 29
	6차개정 2009. 11. 10
	7차개정 2010. 6. 22
	8차개정 2011. 8. 23
	9차개정 2012. 5. 22
	10차개정 2013. 12. 30
	11차개정 2014. 2. 10
	12차개정 2015. 2. 16
	13차 전면개정 2017. 6. 28
	14차개정 2018. 5. 24
	15차개정 2018. 8. 31
	16차개정 2019. 6. 27
	17차개정 2020. 2. 10
	18차개정 2023. 2. 10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6조 제3항에 의해 임용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교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0.>

**제 2 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정년보장 여부에 따른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강사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9. 6. 27.>

**제 3 조(적용)**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강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8. 31., 2019. 6. 27.>

**제 4 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②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5 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신규임용은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제 6 조(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4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 7 조(겸직제한)**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대우학원이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개정2018.5.24.>
4.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세부사항 및 제1항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8 조(파견근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 직책을 맡는 경우

②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 10 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 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 <개정 2023.2.10.>

②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인사 평가 및 사전 심의를 위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2.10.>

## 제 2 장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

### 제 1 절 신규임용

**제 12 조(공개채용의 원칙)** 의료원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임용절차 등)** 교원의 신규임용 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간
2. 보수
3. 책임사항
4. 재임용
5.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조건

**제 15 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

**제 16 조(특별채용)** ① 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특정 임상분야의 권위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교수업적평가

**제 17 조(업적평가 시행)** ① 의료원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

**제 18 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진료영역(임상교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성과급 및 보수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0.>

### 제 3 절 승진 · 재임용

**제 20 조(승진, 재임용 절차 등)**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21 조(승진 탈락자의 재심사)** 승진 심사에 탈락한 교원은 1년 후 승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 조(최저 승진 소요연수와 특별승진)** ① 교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② 최저 승진 소요연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최저 승진 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원 정책상으로 필요한 파견근무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은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1년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제 23 조(승진·재임용 요건)** 교원의 승진 · 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교원 임용심사 평정 점수(별지서식)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 24 조(업적심사기간)** 승진 심사 시 업적심사기간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로 한다. 단, 제22 조 제3항에 의해 제외된 무급휴직기간의 연구업적은 포함하며, 「의료원 교원임용규칙」에서 정한 필수연구업적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 또는 현 직급 재직기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0>

### 제 3 장 신분보장

**제 25 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1절 제2관에 의한다.

**제 26 조 (휴직 및 복직)** ① 교원이 「정관」 제50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은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직중인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은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27 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사망한 때

#### 제 4 장 징 계

**제 28 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 61조 및 「정관」 제68조를 따른다.

**제 29 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 제2절에 따른다.

#### 제 5 장 복 무

**제 30 조(복 무)** 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진료(임상교원) 및 대내외 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1 조(병 가)** ①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교원에게 월일정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32 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수 또는 학회(출장) 등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속대학(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연수 또는 출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3 조(연구년)** ① 의료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의료원 교원 연구년의 시행시기, 대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 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하던 의과대학 전임교원인사규칙은 폐지한다.
- ③ (승진소요연수 적용 예)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임용된 날로부터 승진대상이 되는 연도의 4월 1일 또는 10월 1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④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과대학 교원인사 및 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업적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21조의 업적심사기간은 2012년 3월 1일 승진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3-314호 : 2013.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3-358호 : 2014.0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4-381호 : 2015.0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7-196호 : 2017.06.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6조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2018년 3월 1일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학법대우 제18-74호 : 2018.0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제18-185호 : 2018.8.3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기획팀>-143호 : 2019.6.27)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384호 : 2020.2.10)

-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업적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제24조의 업적심사기간은 2023년 3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은 즉시 적용한다.

부 칙(학법대우 기획팀-467호 : 2023.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